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4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7.

발 의 자:정준호·정동영·민병덕

김현정 • 조인철 • 안도걸

임미애 · 윤후덕 · 양부남

차지호 · 김태선 · 김남희

박정현 · 정성호 · 안태준

임광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, 해당 지구 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%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공공주택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공공임대주택이 35% 이상, 공공분양주택이 30%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나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어 공공에서의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로는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을 70%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, 공공주택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이 45% 이상, 공공분양주택이 35% 이하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의

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).

법률 제 호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전단 중 "50"을 "70"으로 하고, 같은 호 후단 중 "대통령 령으로 정한다"를 "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"로 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공공임대주택: 전체주택 중 100분의 45 이상

나. 공공분양주택: 전체주택 중 100분의 35 이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2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·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	
1. ~ 1의5. (생 략)	1. ~ 1의5. (현행과 같음)		
2. "공공주택지구"란 공공주택	2		
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			
전체주택 중 100분의 <u>50</u> 이상	<u>70</u>		
이 되고, 제6조제1항에 따라			
지정·고시하는 지구를 말한			
다.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			
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			
위에서 <u>대통령령으로 정한다</u> .	<u>다음 각 목의 구분에</u>		
	<u> 따른다</u> .		
<u><신 설></u>	가. 공공임대주택: 전체주택		
	중 100분의 45 이상		
<u><신 설></u>	나. 공공분양주택: 전체주택		
	중 100분의 35 이하		
2의2. ~ 4. (생 략)	2의2. ~ 4. (현행과 같음)		